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1946. 8. 15 제정

2013. 11. 2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학술의 깊은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밀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여성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교는 이화여자대학교라 부른다.

제 3 조 (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에 둔다. (개정 2013.2.25.)

제 2 장 편 제

제 4 조 (대학 및 대학원) ①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을 둔다(이하 “각 대학”이라 한다).

1. 인문과학대학
2. 사회과학대학
3. 자연과학대학
4. 공과대학
5. 음악대학 (신설 2008.3.28)
6. 조형예술대학 (신설 2008.3.28)
7. 사범대학
8. (삭제 2008.10.21)
9. 경영대학
10. 건강과학대학
11. 약학대학
12. 스크랜튼대학 (개정 2007.3.19)

(개정 2008.3.28)

②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

1. 대학원
2. (삭제 2006.1.19)
3. 국제대학원
4. 통역번역대학원

5. (삭제 2013.2.25.)
6. 경영전문대학원 (신설 2006.7.24)
7.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2006.7.24)
8. 법학전문대학원 (신설 2008.10.21)
9. 교육대학원
10. 디자인대학원
11. 사회복지대학원 (신설 2013.2.25.)
12. (삭제 2006.7.24)
13. 신학대학원
14. 정책과학대학원
15. 공연예술대학원 (개정 2009.12.23)
16. (삭제 2006.7.24)
17. 임상보건과학대학원 (개정 2000.2.1)
18. 임상치의학대학원 (신설 2003.2.7)
19.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개정 2009.6.16)
(개정 2008.10.21)

제 5 조 (학부·학과·전공 및 학생정원) ① 각 대학에 두는 학부와 학과 또는 전공과 그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20)

②(삭제 1999.2.9)

③ 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일정한 학기와 학점을 이수한 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전공을 결정하게 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삭제 2000.2.1)

제 5 조의 2 (입학정원의 예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 호(제3호 제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5.22)

제 5 조의 3 (계약학과)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는 별표 3과 같다.

③ 계약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15)

제 6 조 (대학원 학칙 등) 각 대학원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2.1)

제 6 조의 2 (평생교육원) ① 본교에 평생교육원을 둔다.

② 평생교육원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1.7.)

- 제 6 조의 3 (원격평생교육원) ①본교에 원격평생교육원을 둘 수 있다.
②원격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8.30)

제 3 장 부 설 기 관

- 제 7 조 (부속학교 및 병설학교) ①사범대학에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부속 이화·금란중학교, 부속초등학교 및 부속유치원을 두며, 각 부속학교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5.4.21)
②본교에 미디어고등학교 및 영란여자중학교를 병설하며, 각 병설학교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5.4.21)

- 제 8 조 (부속 및 연구기관) ①본교에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1. 이화학술원 (신설 2007.1.22)
 2. 중앙도서관
 3. 교양교육원 (신설 2009.9.22)
 4. 박물관
 5. 자연사박물관
 6. 이화역사관 (개정 2005.4.21)
 7. R&D혁신단 (신설 2007.12.12)
 8. 국제하계대학 (신설 2009.3.27)
 9. 이화리더십개발원 (신설 2007.3.19)
 10. 경력개발센터 (신설 2003.8.12)
 11. 교수학습개발원 (개정 2009.4.21)
 12. 대학건강센터 (개정 2007.12.12)
 13. 출판부
 14. 이화미디어센터 (신설 2006.1.19)
 15. (삭제 2007.1.22)
 16. 언어교육원
 17. 문화예술교육원 (신설 2013.5.15.)
 18. (삭제 2003.8.12)
 19. 발달장애아동센터 (신설 2001.1.6)
 20. 사회복지관
 21. 기숙사
 22. 대학교회
 23. 다락방전도협회 (신설 2001.1.6)
- (개정 2013.5.15.)

②본교에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둔다.

1. 한국문화연구원
2. (삭제 1997.12.23)
3. 한국여성연구원
4. (삭제 1998.5.22)
5. (삭제 1997.12.23)
6. (삭제 1997.12.23)
7. (삭제 2004.8.16)
8. (삭제 1999.3.8)
9. 기초과학연구소
10. (삭제 1999.3.8)
11. (삭제 2003.11.11)
12. 정보통신연구소 (신설 1998.5.22)
13. 세포신호전달연구센터 (신설 1998.7.31)
14. 분자생명과학기술원 (개정 2004.8.30)
15. (삭제 2003.11.11)
16.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신설 2002.8.2)
17.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개정 2012.2.29)
18. (삭제 2007.12.12)
19. 통일학연구원 (신설 2004.8.16)
20. (삭제 2011.5.20)
21. 지능형나노바이오소재연구센터 (개정 2005.11.22)
22. (삭제 2006.5.11)
23. (삭제 2007.3.19)
24. 이화어린이연구원 (신설 2006.5.11)
25. 세포신호전달계바이오의약연구센터 (신설 2006.9.9)
26.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신설 2007.1.22)
27.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개정 2009.9.22)
28. 이화인문과학원 (신설 2007.12.12)
29. 색채디자인연구소 (신설 2007.12.12)
30. 패션디자인연구소 (신설 2007.12.12)
31.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신설 2007.12.12)
32. 다문화연구소 (신설 2008.8.19)
33. 양자메타물질연구센터 (신설 2008.11.14)
34. 지구사연구소 (신설 2009.3.27)
35. 초기우주과학기술연구소 (신설 2009.3.27)

36. (삭제 2012.10.31)
 37. 바이오레독스시스템연구센터 (신설 2009.3.27)
 38.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신설 2009.3.27)
 39. 촉매반응·합성연구센터 (신설 2009.3.27)
 40.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신설 2009.5.26)
 41. 공연문화연구센터 (신설 2009.5.26)
 42. 글로벌 STS교육연구소 (신설 2009.12.29)
 43. 동아시아연구센터 (신설 2009.12.29)
 44.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신설 2010.3.16)
 45.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신설 2010.3.16)
 46.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신설 2010.3.16)
 47.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 (신설 2010.12.1)
 48. 이화CNRS 국제공동연구소 (신설 2010.12.1.)
 49. 세포항상성연구센터 (신설 2013.2.25.)
 50. 뇌융합과학연구원 (신설 2013.2.25.)
- ③본교에 각 대학(원)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1. (삭제 2006.1.19)
 2. (삭제 2005.4.21)
 3. 정책과학대학원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 기록관리교육원 (개정 2011.6.20)
 4. (삭제 2005.8.17)
 5.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개정 2006.7.24)
 6.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 영재교육원 (개정 2009.12.23)
 7. 경영대학: 국제회의센터 (신설 2005.12.19)
 8. 건강과학대학: 사회체육교육센터 (신설 2008.9.17.)
 9. 약학대학: PHC 센터 (신설 2012.2.29)
- (개정 2012.2.29)
- ④본교에 대학(원) 및 의료원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둔다.
1. 국제대학원 : 국제통상 · 협력연구소 (개정 2002.2.14)
 2. 통역번역대학원 : 통역번역연구소 (신설 2005.4.21)
 3. (삭제 2013.2.25.)
 4.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학연구소 · 이화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
(신설 2013.11.20.)
 5.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 생명의료법연구소 · 젠더법학연구소 (신설 2009.4.21)
 6. 교육대학원: 예술교육치료연구소 (신설 2009.9.22)
 7. (삭제 2012.12.31.)
 8. 사회과학대학 : 사회과학연구소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 사회복지연구소

(개정 2013.2.25.)

9. 자연과학대학 : 에코과학연구소 · 수리과학연구소 · 나노·바이오기술연구소 · 미생물
자원개발연구센터 · 이화통계연구소 · 청정에너지소재연구소

(개정 2013.11.20)

10. 공과대학 : 환경문제연구소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
공학융합연구소 (개정 2012.10.31)

11. 음악대학 : 음악연구소 · 무용학연구소 (개정 2012.2.29)

12. 조형예술대학 : 도예연구소 · 융합디자인연구소 (개정 2013.11.20.)

13. (삭제 2011.2.11)

14. 사범대학 : 교육과학연구소 · 교과교육연구소 · 특수교육연구소 · 학교폭력예방연
구소 (개정 2012.5.17)

15. (삭제 2009.4.21)

16. 경영대학 : 경영연구소

17. 건강과학대학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 간호과학연구소 · 스포츠과학연구소
(개정 2013.11.20)

18. (삭제 2013.11.20)

19. (삭제 2011.2.11)

20. 약학대학 : 약학연구소

21. (삭제 2010.3.16)

22. (삭제 2006.6.28.)

23. 의료원 : 이화융합의학연구원 (신설 2012.2.29)

(개정 2013.11.20)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부속기관 및 연구기관의 조직,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조의 2 (의료원) ①본교에 의료원을 두며, 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병원을 둔다.

1. (삭제 2011.8.30)

2. 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②제1항의 의료원의 조직,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7.10)

제 9 조 (기숙사) ①본교에 기숙사를 둔다.

- ②(삭제 1996.2.15)

③기숙사의 입사절차, 생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원의 교수시간 (개정 1998.6.23)

제 10 조 (학년, 학기) ①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

학기과 제2학기로 나눈다.

②제1항의 일반학기 외에 하기방학과 동기방학중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제 11 조 (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6.2.15)

②계절학기를 두는 경우 1계절학기의 수업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③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 수업일수에서 2주 이내를 감축할 수 있다. (신설 1996.2.15)

제 12 조 (휴업일) ①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기방학 및 동기방학
2. 개교기념일 (5월 31일)
3. 일요일
4. 기타 국정공 휴일

②하기방학 및 동기방학의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제 12 조의 2 (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 주 6학점에 해당하는 6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2.7)

제 5 장 입학, 편입학 및 등록

제 13 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편입학 및 외국인(외국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의 신입학시기는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10.13)

제 14 조 (입학자격) ①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자로 한다. (개정 2003.2.7)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개정 1992.3.16)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1992.3.16)

② (삭제 2006.6.28)

제 15 조 (편입학) ①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학부, 학과 또는 전공에 있어서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 호(제3호 제외)에 해당하는 자로서 편입학하는 학생은 입학정원 외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②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 외로 제3학년(의학과외의 경우 제1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③ 기초·소양교육을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약학대학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1.4.15)

④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4.15)

제 16 조 (입학지원 서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본교 소정의 입학원서 기타 총장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2)

제 17 조 (입학전형) ① 제1학년에 입학할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입학전형을 한다.

② 입학전형은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별고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③ 체육·문학·어학·수학·과학 및 예능 특기자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기자의 입학전형은 고등학교의 성적과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특기심사를 병과한다. (개정 1998.5.22)

⑤ 기타 입학전형의 방법,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모집할 때마다 총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1996.2.15)

제 17 조의 2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① 입학전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입학정책을 연구·수립하기 위하여 입학처 내에 입학전형정책연구위원회를 두고, 입학전형정책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4.8.30)

③ 입학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입학처 내에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를 두고,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04.8.30)

④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고,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4.8.30)

⑤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정책연구위원회,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4.8.30)

제 17 조의 3 (입학사정관) ①입학전형의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 국제화를 위하여 총장은 입학사정관을 위촉하여 입학전형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입학사정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본조신설 2009.6.16)

제 18 조 (입학사정) ①입학 및 편입학은 교무회의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단서의 경우나 재입학, 각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교무회의의 사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7.6)

②총장은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1항의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7.6)

③제2항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의 사유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7.6)

제 19 조 (입학금 등)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3)

②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20 조 (보증인) ①학생은 부모 기타의 자로서 학생의 재학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만한 능력이 있는 자를 보증인으로 정한다. (개정 1996.2.15)

②(삭제 1996.2.15)

③학생은 보증인의 주소와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5)

제 21 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22 조 (수강신청) ①학생은 소정 기일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

②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2.1)

③(삭제 1984.3.5)

④수강신청에 관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6.2.15)

제 6 장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제 23 조 (수업년한) ①각 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공과대학의 건축학전공은 5년으로 하고, 의과대학은 6년으로 하되 의예과는 2년, 의학과는 4년으로 하며, 약학대학은 6년으로 하되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은 2년으로 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3.2.25.)

②(삭제 1984.3.5)

③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학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1.9.24)

제 24 조 (재학년한) ①재학년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10.10)

②의과대학 학생의 재학년한은 의예과는 4년, 의학과는 8년을 초과할 수 없고, 공과대학의 건축학전공 학생의 재학년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2.25.)

③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재학년한은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10.10)

④재입학한 학생의 재학년한은 재입학전 재학기간을 산입하여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한 학생의 재학년한은 잔여수업년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잔여수업연한의 2배에 1년을 더한 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10.10)

⑥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9.24)

제 7 장 교 내 전 학

제 25 조 (전과) ①학생이 소속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의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을 원할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2.9)

②전과의 허가는 매 학기에 할 수 있다. (개정 1999.2.9)

③전과의 기준·대상·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2.3.16)

제 8 장 휴학, 복학, 제적, 퇴학 및 재입학

제 26 조 (휴학)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3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8.7.28)

③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상의 필요에 따라 총장이 지정하는 학부, 학과 또는 전공에 있어서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개정 1996.2.15)

④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건축학전공의 경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을 추가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⑤(삭제 1985.9.9)

제 27 조 (복학) ①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3.2.7)

제 28 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신고없이 3주일 이상을 결석하거나 출석이 고르지 못한 자
3.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4. 성적이 불량한 자 (개정 2002.11.8)
5. 재학년한 내에 본교 소정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6. 타교에 입학한 자
7. (삭제 2003.2.7)
8.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신설 2002.2.14)

제 29 조 (삭제 1987.9.1)

제 30 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이 연서한 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31 조 (재입학) ①제28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제30조에 의하여 퇴학한 자에게는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8.19)

②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 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8.8.19)

제 31 조의 2 (법령 등에 의한 재입학의 특례)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한 처분 또는 권고 등에 의하여 재입학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17)

제 9 장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 (개정 2007.8.21)

제 32 조 (교과목의 분류) 본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대학기초과목,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4.15)

제 33 조 (교양과목) 교양과목의 종류와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6.2.15)

제 33 조의 2 (대학기초과목) 대학기초과목의 종류와 학점은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5)

제 34 조 (전공과목) 전공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되, 각각 그 종류와 학점은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5.3.5)

제 35 조 (학점) 교과과정인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개정 1999.2.9)

제 35 조의 2 (학점취득의 특례) ①교양과목 중 특정교과목은 이를 수강하지 아니하여도 학점취득특별시험에 의하여 학기당 최대취득학점 외에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 학점수는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2.15)

②학점취득특별시험의 방법, 종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9.24)

제 35 조의 3 (학점의 인정)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취득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31.)

1.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입학 전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②학점의 인정범위 등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6.23)

③(삭제 1998.6.23)

제 35 조의 4 (국내외 연수) ①각 대학장은 교과과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연수를 시행하고,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안에서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0.7)

제 35 조의 5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각 대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본교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하여 각 대학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3.5.15.)

③제2항에 따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제35조의3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15.)

④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5.15.)

(개정 2013.5.15.)

제 36 조 (수업시간표) 매 주의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정한다.

제 37 조 (학수번호) 각 교과목의 학수번호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8 조 (시험) 시험은 매 학기의 중간과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제 39 조 (성적) ①학업성적은 시험 또는 평소의 성적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하고 등급에 따라 학점마다 성적점을 주며, D-이상은 급제, F는 낙제로 한다.

등급	성적점
A ⁺	4.3
A ^o	4.0
A ₋	3.7
B ⁺	3.3
B ^o	3.0
B ₋	2.7
C ⁺	2.3
C ^o	2.0
C ₋	1.7
D ⁺	1.3
D ^o	1.0
D ₋	0.7
F	0

(개정 1988.7.28)

②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성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S는 성적점 계산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 (개정 1994.9.6)

③낙제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때에는 재수하여야 하고 선택과목인 때에는 재수할 수 있다. (개정 1981.5.19)

④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하였을 때의 성적점 계산에 있어서는 그 재수전의 성적 대신 새로 이수하여 득점한 성적으로 계산한다. (개정 1988.7.28)

⑤성적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81.5.19)

제 40 조 (결석자에 대한 제재) 1학기 수업시간의 6분의 1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한다.

제 41 조 (성적불량학생에 대한 조치) ①학기말의 평균성적이 2.00 미만인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교학부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2.15)

②(삭제 1988.7.28)

③(삭제 1988.7.28)

④학기말의 평균성적이 1.6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고,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다만,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된 자 또는 학사

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로 제적 또는 퇴학하였다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한 후부터 학사경고를 1회 받은 때에는 제적한다. (단서신설 2002.11.8)

⑤성적이 불량하여 한 학년의 전 교과목 또는 일부 교과목을 재수하여야 할 때에는 학년단위로 2회에 한하여 유급시킬 수 있으며, 재학기간중 2회를 초과할 때에는 제적한다. 유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88.7.28)

⑥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년한의 만료시까지 총평균성적이 1.70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7.28)

제 41 조의 2 (삭제 1988.7.28)

제 42 조 (추가시험) ①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말시험에 응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다만, 그 성적은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낮춘다.

②추가시험은 당해 학기말 시험기간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한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1.5.19)

제 43 조 (삭제 1999.2.9)

제 44 조 (학점의 취소)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 44 조의 2 (학점의 포기) ①학생이 본교 재학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학점포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4)

제 45 조 (학기당 취득 학점) ①일반학기의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전 학기(계절학기를 제외한다)말의 평균성적이 3.75 이상인 경우에는 21학점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6.)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인 18학점에 미달하는 때에는 2학점 범위 내에서 잔여 학점을 다음 학기에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2.15)

③승인없이 취득기준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삭제 2001.1.6)

⑤계절학기에는 6학점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휴학중인 학생은 계절학기에 등록하여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3.10.10)

⑥대학장은 학기말의 평균성적이 1.50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1.5.19.)

(개정 2011.12.15)

제 46 조 (수강신청의 취소)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하지 아니하

고 수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한다.

제 47 조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심화전공) ① 학생은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총장의 허가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전공(이하 “복수전공”이라 한다)
2. 2 이상의 학과, 2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 “연계전공”이라 한다)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이하 “자기설계전공”이라 한다)

(본항신설 1998.6.23)

② 전공과목의 소요 취득 학점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6.23)

③ 학생이 소속 학과 또는 전공 이외의 전공 교과목을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 학점 이상 취득한 때에는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1998.6.23)

④(삭제 1998.6.23)

⑤ 각 학과 또는 전공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소전공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는 심화전공을 둘 수 있다. (본항신설 2007.8.21)

⑥ 심화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항신설 2007.8.21)

(개정 2007.8.21)

제 47 조의 2 (삭제 1992.3.16)

제 47 조의 3 (조기졸업제) ①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정의 전 과정을 조기이수한 후 총 평균성적이 3.75 이상인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전기와 후기에 조기졸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9)

②(삭제 1992.3.16)

제 47 조의 4 (학·석사 연계과정) ① 각 학과 또는 전공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9.24)

제 47 조의 5 (인증제 과정) ① 각 학과 또는 전공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증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제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7)

제 48 조 (졸업에 필요한 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9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2.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은 교과과정상의 필요에 따라 특정 학과 또는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129학점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③학생은 재학기간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학점외에 훈련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0.6.20.)

⑤학생은 재학기간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학점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영어강의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0)

⑥스크랜튼학부 자유전공 입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제1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한다. (신설 2009.2.23.)

(개정 2013.11.20.)

제 48 조의 2 (영어 및 정보인증자격 요건) ①총장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학과의 경우에는 별도의 졸업요건으로 영어, 정보 등에 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이나 자격취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6.20)

제 49 조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수강 특례) ①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3학년 이상 수료한 후부터 대학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수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9.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9.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중 6학점까지는 학사학위과정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나머지 학점은 해당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50 조 (졸업) ①이 학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 제1호)의 증서에 의하여 별표 2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스크랜튼학부 자유전공 입학생의 학사학위는 제1전공의 학사학위로 한다. (개정 2013.11.20)

②복수전공을 이수하고 당해 각 전공부문의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수한 각개의 전공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하되, 자기설계전공의 수여학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0.2.1)

③졸업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그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개정 1992.3.16)

제 50 조의 2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①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 중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는 학점인정 교과목을 48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학위수여 신청을 할 경우 총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

여할 수 있다.

②전항의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16)

제 51 조 (졸업논문 등)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논문제출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질상 논문제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과 또는 전공의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2.15)

②(삭제 1997.12.23)

③(삭제 1997.12.23)

④(삭제 1997.12.23)

⑤(삭제 1997.12.23)

⑥제4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에 의해 본교 대학원에 입학할 허가받은 학생에게는 제1항의 졸업논문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⑦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 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9.24)

제 52 조 (졸업의 취소) 착오로 인하여 졸업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0 장 학생 활동

제 53 조 (총학생회 등) ①학생은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88.7.28)

②제1항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88.7.28)

③(삭제 1988.7.28)

④(삭제 1988.7.28)

⑤(삭제 1988.7.28)

제 54 조 (학생단체 등의 지도)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활동지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88.7.28)

제 55 조 (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88.7.28)

제 56 조 (학생활동의 한계)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과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반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1988.7.28)

제 57 조 (학생생활지도) 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분담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1988.7.28.)

제 57 조의 2 (사회봉사활동 지원)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도록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17)

제 57 조의 3 (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5.17)

제 11 장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 (개정 2006.1.19)

제 58 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학생에 대하여 중앙지도위원회 또는 대학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23)

제 59 조 (징계) ①총장은 중앙지도위원회 또는 대학지도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997.12.23)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개정 1988.7.28)

②징계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1.19)

③(삭제 1988.7.28)

④(삭제 1988.7.28)

⑤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본항신설 2006.1.19)

제 12 장 등록금 (개정 2011.2.24.)

제 60 조 (등록금) 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제 60 조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①등록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2.24.)

제 61 조 (등록금의 면제) ①등록기간 만료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에게는 당해 휴학기간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을 면제한다. (개정 2011.2.24.)

②(삭제 2002.10.7)

(개정 2011.2.24)

제 62 조 (등록금의 반환)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을 반환한다. (개정 2011.2.24)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재학중인 자가 휴학한 경우 (신설 2002.10.7)
- ②제1항의 반환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1.2.24)
- (개정 2011.2.24)

제 13 장 장학금 및 대여금

- 제 63 조 (장학금 등) ①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학비마련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는 품행, 학업성적, 신앙 등을 참작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거나 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6.2.15)
- ②장학금 및 대여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장 공개강좌

- 제 64 조 (공개강좌 개설) 실무,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본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제 65 조 (공개강좌의 과목 등)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장소, 수강자격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66 조 (삭제 1981.5.19)

제 15 장 직제, 교수회 및 교무회의

- 제 67 조 (직제) 본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 제 67 조의 2 (중앙행정기관) ①본교 교무운영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교무처
 2. 기획처
 3. 학생처
 4. 입학처
 5. 총무처
 6. 재무처

7. 연구처

8. 국제교류처 (신설 2007.1.22)

9. 정보통신처

10. 대외협력처

(개정 2007.1.22)

②제1항의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직제에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 67 조의 3 (산학협력단) ①본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산학협력단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②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 68 조 (교수회) 본교의 교수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9 조 (교무회의) 본교의 교무회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6 장 자 체 평 가 (신설 2009.9.22)

제 69 조의 2 (자체평가) ①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자체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등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2)

제 17 장 학 칙 개 정 (개정 2009.9.22)

제 70 조 (학칙개정) 이 학칙의 개정은 사전공고,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개정 2013.11.20)

부 칙(1946. 8. 15 제정)

본 학칙은 194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본 학칙은 196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정한다.

부 칙(문관행 1040.1-1549, 1963. 12. 16 개정)

본 학칙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고대 1041.3-16, 1965. 1. 5 개정)

①이 학칙은 196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문리과대학에 소속하는 가정학과와 사범대학에 소속하는 가정학과는 폐과하되 그 재적 학생의 졸업년도까지 존치한다.

부 칙(문고대 1041.3-89, 1966. 2. 1 개정)

본 학칙은 196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고대 1041.3-89, 1966. 2. 1 개정)

본 학칙은 196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고대 1041.3-171, 1967. 1. 24 개정)

본 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고대 1041.3-2042, 1967. 12. 5 개정)

①본 학칙은 서기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음악대학 중 기악과의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종교음악전공” 및 미술대학 중 회화과의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과 약학대학 약학과의 “약학전공, 제약화학전공” 재학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졸업연도까지 존속한다.

부 칙(대관 1041.3-1389, 1968. 2. 26 개정)

①본 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칙에 학과명 변경 및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부 칙(대관 1041.3-1335, 1968. 12. 19 개정)

본 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학 1041.3-56, 1970. 12. 31 개정)

본 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학 1041.3-3864, 1971. 10. 21 개정)

본 학칙은 197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부 칙(대학 1041.3-4260, 1971. 12. 31 개정)

- ①본 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과된 임상간호학과 및 보건간호학과는 구 학칙에 의거 잔여 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부 칙(대학 1010-77, 1973. 1. 9 개정)

- ①본 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1972학년도 및 그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대학 1041.3-5, 1973. 12. 31 개정)

이 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1010-61, 1974. 1. 23 개정)

- ①이 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197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학무 1010-369, 1975. 2. 28 개정)

- ①이 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197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5조, 제23조, 제25조 및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 규정을 적용하며, 제10조 제2항, 제47조 제2항, 동 조 제4항, 제50조 제3항 및 제52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학무 1010-928, 1975. 7. 25 개정)

이 학칙은 197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1010-628, 1976. 3. 1 개정)

이 학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1010-124, 1977. 1. 28 개정)

- ①이 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제개편실 험을 위한 특례학칙은 이를 폐지한다.
- ③제10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제45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47조 제3항, 제49조 및 제50조 제2항의 규정은 1974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제41조 및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6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해

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학무 1010-471, 1978. 3. 7 개정)

이 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1041.3-1019, 1979. 7. 5 개정)

이 학칙은 197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중 신설되는 동서교육연
구소에 관한 사항은 1979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1041.3-932, 1981. 5. 19 개정)

①이 학칙은 198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198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급에 따르
는 성적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성 적 점
A+	4
A	
A-	
B+	3
B	
B-	
C+	2
C	
C-	
D+	1
D	
D-	
F	0

부 칙(학무 1041.3-362, 1982. 2. 14 개정)

이 학칙은 198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1041.3-590, 1982. 3. 13 개정)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1041.3-1917, 1983. 11. 10 개정)

이 학칙은 198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1041.3-187, 1984. 1. 31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제11292호, 1983.12.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 제7호와 제31조 제1항의 단서 및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학무 1041.3-602, 1984. 3. 5 개정)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1041.3-1408, 1984. 8. 29 개정)

이 학칙은 198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25210-487, 1985. 3. 5 개정)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25210-1307, 1985. 9. 9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1년 기간으로 휴학중인 학생에 대하여도 그 휴학기간을 1학기로 단축할 수 있다.

부 칙(학무 25210-8, 1986. 1. 7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1985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학무 25210-707, 1986. 7. 2 개정)

이 학칙은 198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25210-394, 1987. 2. 28 개정)

이 학칙은 198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25210-1079, 1987. 9. 1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제 12237호, 1987.8.29)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31조 및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학무 25210-586, 1988. 3. 21 개정)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25210-835, 1988. 7. 28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41조 제6항의 규정 중 “1.70 미만”을 1985학년도 이전입학생에 대하여는 “1.60 미만”으로, 1986학년도 및 1987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1.65 미만”으로 각각 바꾸어 적용한다.

부 칙(학무 25210-455, 1989. 3. 22 개정)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학무 25210-691, 1989. 7. 12 개정)
이 학칙은 198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25210-306, 1990. 2. 17 개정)
이 학칙은 199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25210-587, 1990. 6. 5 개정)
이 학칙은 1990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25210-517, 1991. 4. 10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생물학과, 교육학과의 교육학전공, 유아교육전공, 초등교육전공 및 과학교육과의 수학전공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각각 생물과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및 수학교육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학무 25210-508, 1992. 3. 16 개정)
이 학칙은 199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25210-1574, 1992. 12. 31 개정)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81412-556, 1993. 3. 31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제 13,875 호, 1993.4.2) 제2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7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 13,875 호, 1993.4.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학무 81210-975, 1993. 7. 10 개정)

이 학칙은 199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81412-2039, 1993. 12. 24 개정)

이 학칙은 199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81412-507, 1994. 3. 7 개정)

이 학칙은 199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81412-1295, 1994. 9. 6 개정)

이 학칙은 199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81412-1670, 1994. 12. 21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도서관학과, 환경과학과, 생활미술과, 사회체육과 및 건강교육과의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각각 문헌정보학과, 환경공학과, 정보디자인과, 사회체육학과 및 보건교육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학무 81412-789, 1995. 6. 23 개정)

이 학칙은 199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81412-1205, 1995. 8. 31 개정)

이 학칙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5조의 3의 개정규정은 199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학무 81412-351, 1996. 2. 15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학칙에서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상경대학, 약대학 및 가정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각 전공에 해당하는 학과로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1998학년도까지는 위 대학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1999학년도 이후에는 이 학칙상의 해당 대학 해당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학무 81412-1717, 1996. 10. 23 개정)

이 학칙은 199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81412-250, 1997. 2. 5 개정)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81213-2324, 1997. 12. 23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미술대학, 공과대학 전자계산학과, 사범대학 교육심리학과, 상경대학 경제학과, 가정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의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조형예술대학, 공과대학 컴퓨터학과,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전공),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전공), 가정과학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2. 1997학년도 이전에 사범대학 교육심리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사범계열 학생의 자격을 갖는다.
3. 1997학년도 이전에 학부 또는 계열별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의 소속대학 학부 또는 계열 내에서만 전공선택 및 전공변경을 할 수 있다.

부 칙(1998. 5. 22 개정)

이 학칙은 199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6. 23 개정)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7. 31 개정)

이 학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9 개정)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45조 제3항, 제47조의 3 제1항,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학칙에서 공과대학, 음악대학, 체육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각 전공에 해당하는 학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과로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2001학년도까지는 위 대학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2학년도 이후에는 이 학칙상의 해당 대학 해당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 당시 음악대학 국악과,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영어교육전공,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불어교육전공, 상경대학 상경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하여 음악대학 한국음악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부(1998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은 제2외국어학부) 불어불문학전공, 경영대학 경영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1998학년도 이전에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불어교육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사범대학 동학과의 종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범계열 학생의 자격을 갖는다.

부 칙(1999. 3. 8 개정)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0. 25 개정)

이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1 개정)

이 학칙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1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50조 제2항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과학대학 제2외국어학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및 환경공학과, 공과대학 컴퓨터·전자공학부 컴퓨터학전공 및 전자공학전공, 건축·환경시스템학부 건축학전공 및 환경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하여 인문과학대학 외국어문학부, 공과대학 정보통신학과 및 환경학과, 공과대학 공학부 컴퓨터학전공 및 정보통신학전공, 공학부 건축학전공 및 환경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1999학년도에 공과대학 컴퓨터·전자공학부, 건축·환경시스템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의 소속 학부 내에서만 전공 선택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부 칙(2000. 6. 20 개정)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13 개정)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6 개정)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은 2000년 11월 8일부터, 제50조 제1항은 2001년 2월 1일부터, 동조 동항 중 [별표 2]의 여성학전공자에 대한 문학사 수여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6 개정)

이 학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24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별표 1 및 제50조의 별표 2의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200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2.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2. 2. 14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가정과학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생활환경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 3 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별표2 및 제38조 제1항 별표3 중 “가정과학대학”을 “생활환경대학”으로 한다.

②이화여자대학교 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및 제3조 제9호 중 “가정과학대학”을 각각 “생활환경대학”으로 한다.

③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중 “생물과학”을 “생명과학”으로, “가정과학대학”을 “생활환경대학”으로 한다.

④교원실적평가에 관한 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별표1 중 “생물과학”을 “생명과학”으로 한다.

⑤학술지 등급·계열구분 등에 관한 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및 제8조 제8호 중 “가정과학대학”을 각각 “생활환경대학”으로 한다.

⑥학생식당운영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가정과학대학”을 “생활환경대학”으로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⑦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운영 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가정과학대학”을 “생활환경대학”으로 한다.

⑧기초과학연구소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실 운영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가정과학대학”을 “생활환경대학”으로 한다.

⑨아시아식품영양연구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 중 “가정과학대학장”을 각각 “생활환경대학장”으로 한다.

⑩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3조의2 제3항,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 중 “가정과학대학장”을 각각 “생활환경대학장”으로 한다.

부 칙(2002. 3. 12 개정)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2 개정)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7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2001학년도 이전에 휴학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입금이 이월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입금 전액이 이월된 경우: 납입하지 아니함
2. 납입금의 3분의 2 해당액이 이월된 경우: 휴학당시 납입금의 3분의 1 해당액
3. 납입금의 2분의 1 해당액이 이월된 경우: 휴학당시 납입금의 2분의 1 해당액

부 칙(2002. 11. 8 개정)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7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적학생 등의 구제를 위한 특례) 이 학칙 시행 당시 구 학칙 제28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적된 자 또는 같은 사유로 자퇴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신청하여 당해 전공(또는 학과)의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재입학할 수 있다.

부 칙(2003. 8. 11 개정)

이 학칙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13호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0 개정)

이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11 개정)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20 개정)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3은 산학협력단 설립등기 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11 개정)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 16 개정)

이 학칙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관련하여 “별표 1”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 30 개정)

이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2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보과학대학원 폐지를 위한 경과조치) 정보과학대학원은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 2. 11 개정)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21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4 개정)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7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6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17 개정)

이 학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22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별표 1]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 제1항 관련 2007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는 편제) 제4조 제1항과 관련하여 2007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는 편제는 다음과 같다.

1. 인문과학대학
2. 사회과학대학
3. 자연과학대학
4. 공과대학
5. 음악대학
6. 조형예술대학
7. 체육과학대학
8. 사범대학
9. 법과대학
10. 경영대학
11. 의과대학
12. 간호과학대학
13. 약학대학
14. 생활환경대학

부 칙(2005. 12. 19 개정)

이 학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항 제6호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9 개정)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별표 1]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구 학칙 시행당시 조형예술대학 디자인학부 복식디자인전공, 사범대학 사회생활학과 역사전공·일반사회전공·지리전공, 과학교육과 물리전공·화학전공·생물전공·지구과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하여 조형예술대학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사범대학 사회생활학과 역사교육전공·일반사회교육전공·지리교육전공,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전공·화학교육전공·생물교육전공·지구과학교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2005학년도에 입학하여 구 학칙 시행당시 경영대학 경영학부 비서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경영대학 경영학부 국제사무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③(사회복지대학원 폐지를 위한 경과조치) 사회복지대학원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 5. 11 개정)

이 학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제5호, 동조 제2항 제22호 및 동조 동항 제23호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8 개정)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제18호는 2005년 8월 13일부터, 제50조 [별표 2] 중 바이오인포매틱스 연계전공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50조 [별표 2]와 관련하여, 편제 조정으로 인하여 이 학칙 시행당시 소속대학이 변경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학과(전공) 또는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학과(전공)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구 학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대 학	학위의 종류	학과 또는 전공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사회복지학 분자생명과학 컴퓨터학 정보통신학 건축학(4년제) 건축학(5년제)
음악대학	건축학사 공학사 음악학사	환경학 건반악기 관현악 성악 교회음악 작곡 한국음악
조형예술대학	미술학사	한국화 회화·판화 조소 환경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섬유예술 도자예술
체육과학대학	이학사	체육학 사회체육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의과대학 간호과학대학 약학대학 생활환경대학	무용학사 보건학사 문학사 의학사 간호학사 약학사 문학사 가정학사 이학사	무용 보건교육 비서학 의학 간호과학 제약학 소비자인간발달학 의류직물학 식품영양학

부 칙(2006. 7. 24 개정)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6호 및 동조 동항 제15호는 2006년 9월 1일부터, 동조 동항 제10호 및 제8조 제3항 제5호는 2006년 3월 1일부터, 제4조 제2항 제11호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9 개정)

이 학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11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구 학칙 시행 당시 공과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에 재적하고 있었던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정보통신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1. 22 개정)

이 학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26호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19 개정)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7 개정)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21 개정)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27호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12 개정)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제10호는 2007년 10월 9일부터, 동조 제2항 제31호는 2007년 10월 1일부터, 동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18호, 제29호, 제30호 및 제4항 제12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동조 제2항 제28호 및 제4항 제4호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8 개정)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별표 2]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7 개정)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28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제2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19 개정)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32호는 2008년 8월 1일부터, 동조 제4항 제4호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17 개정)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17호는 2008년 8월 1일부터, 동조 제3항 제8호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21 개정)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제12호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4 개정)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2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8 개정)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23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항 제6호 및 별지 (서식 제1호)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0조 [별표 2]와 관련하여, 편제 조정으로 인하여 이 학칙 시행당시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학과(전공)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구 학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대 학	학위의 종류	학과 또는 전공
예 술 대 학	음 악 학 사	건 반 악 기
		관 현 악
		성 악
		작 곡
	미 술 학 사	한 국 음 악
		동 양 화
		서 양 화
		조 소
		섬 유 예 술
		도 자 예 술
법 과 대 학	의 류 학 사	의 류 학
	무 용 학 사	무 용 학
	법 학 사	법 학

부 칙(2009. 3. 27 개정)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38호 및 제39호는 2009년 2월 1일부터, 동조 동항 제36호 및 제37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동조 동항 제34호 및 제35호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21 개정)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26 개정)

이 학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6 개정)

이 학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2는 2009년 9월 1일부터, 제4조 제2항 제19호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22 개정)

이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27호는 2009년 6월 1일부터, 동조 제4항 제5호는 2009년 8월 1일부터, 제69조의 2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3 개정)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항 제6호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9 개정)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42호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동조 동항 제43호의 시행일은 추후 정한다.

부 칙(2010. 3. 16 개정)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44호 내지 제46호 및 동조 제4항 제19호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1 개정)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1 개정)

이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1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부 칙(2011. 2. 24 개정)

이 학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5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약학대학 입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1. 5. 20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0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13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20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30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제8조제4항제8호 및 제50조는 2011년 9월 1일부터, 제8조의2제1항제1호는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14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15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제8조제4항제9호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9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7호는 2011년 12월 1일부터, 같은 조 제4항제22호는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기 교과과정 개편 시까지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126학점으

로 한다.

부 칙(2012. 5. 17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제13호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31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제8조제2항제36호는 2012년 2월 29일부터, 제8조제4항제9호 및 제16호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31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제6호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제35조의3제1항, 제50조제1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5 개정)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9호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15.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7호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20.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제8조제4항의 제4호는 2012년 6월 1일부터, 제12호는 2013년 6월 1일부터, 제9호 및 제17호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과 또는 전공별 입학정원 (2014학년도)(제5조 관련)

(개정 2013.11.20)

대학	학 부	학과 또는 전공	입학정원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부	ㄱ 국어국문학 전공 중어중문학 전공 영어영문학 전공 불어불문학 전공 독어독문학 전공 사 학 전공 ㄴ 철 학 전공	433
	기독교학부	기독교학 전공	20
	계		453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ㄱ 정치외교학 전공 행정학 전공 경제학 전공 문헌정보학 전공 사회학 전공 사회복지학 전공 심리학 전공 ㄴ 소비자학 전공	337
	언론·홍보·영상학부	ㄱ 언론정보학 전공 광고·홍보학 전공 ㄴ 방송·영상학 전공	90
	계		427
자연과학대학	수리물리과학부	ㄱ 수 학 전공 통계학 전공 ㄴ 물 리 학 전공	124
	분자생명과학부	ㄱ 화학·나노과학 전공 ㄴ 생 명 과 학 전공	171
	계		295
공과대학	건축학부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71 60
		ㄱ 건 축 학 전공 ㄴ 건 축 공 학 전공	55
	환경·식품공학부	ㄱ 환 경 공 학 전공 ㄴ 식 품 공 학 전공	82
	계		268

(계속)

대학	학 부	학과 또는 전공	입학정원
음악대학	음악학부	┌ 건반악기 전공 관현악 전공 성악 전공 작곡 전공 └ 한국음악 전공	198
		무용과	43
	계	241	
조형예술대학	조형예술학부	┌ 동양화 전공 서양화 전공 조소 전공 └ 도자예술 전공	142
	디자인학부	┌ 공간디자인 전공 시각디자인 전공 산업디자인 전공 └ 영상디자인 전공	85
	섬유·패션학부	┌ 섬유예술 전공 패션디자인 전공 └ 의류학 전공	115
	계	342	
사범대학		교육학과	30
		유아교육과	32
		초등교육과	39
		교육공학과	36
		특수교육과	38
		┌ 유아특수교육 전공 초등특수교육 전공 └ 중등특수교육 전공	
		영어교육과	42
		사회과교육과	84
		┌ 역사교육 전공 사회교육 전공 └ 지리교육 전공	
		국어교육과	30
과학교육과	104		
┌ 물리교육 전공 화학교육 전공 생물교육 전공 └ 지구과학교육 전공			
수학교육과	32		
계	467		

(계속)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대학	학 부	학과 또는 전공	입학정원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 전공	132
		국제사무학과	25
		계	157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간호학 전공	78
		글로벌건강간호학 전공	
	체육과학부	체육과학 전공	60
		식품영양학과 보건관리학과	50 31
	계	219	
약학대학		약학과	120
		계	120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자유전공	40
		국제학부	80
		계	120
총 계			3,109

[별표 2] 학사학위의 종류(제50조 관련)

(개정 2013.11.20)

대 학	학위의 종류	학과 또는 전공
인문과학대학	문 학 사	국어국문학 철학 사학 기독교학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불어불문학 독어독문학
사회과학대학	정치학사 행정학사 경제학사 문학사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제학 문헌정보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소비자학 인문정보학 광고·홍보학 방송·영상학
자연과학대학	이 학 사	수학 통계학 물리학 화학·나노과학 생명과학
공과대학	공 학 사 건축학사 공학사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건축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식품공학
음악대학	음 악 학 사	건반악기 관현악 성악 작곡 한국음악 무용
조형예술대학	무 용 학 사 미 술 학 사	동양화 서양화 조형예술 섬유예술 도자예술 공간디자인 공각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영상디자인 의류학

(계속)

[별표 3]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제5조의 3 관련)

(신설 2011.4.15)

설치대학	설치형태	학과 또는 전공	학위의 종류	입학정원(명)
약학대학	재교육형	산업계약학과	전문약학사	10

졸업증서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전공 ○○○○ (○○학사)

○○○○ (○○학사)

○○○○ (○○학사)

부전공 ○○○○

년 월 일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 ○ ○ (인)

학위번호: 이화여대 ○○○○ (학) ○○○○

제 호